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안)

- 사 업 명 :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북도 경산시(교통행정과)
- 제조사·공급사 : (주)뮤텍스
- 협 약 대 상 : 응용(개발) 소프트웨어(S/W) ITS, BIS 각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34,710,000원, VAT 포함)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5년 10월 21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경산시

제조사·공급사명 (주)뮤 텍 스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안)

- 사 업 명 :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북도 경산시(교통행정과)
- 제조사·공급사 : (주)에티버스
- 협 약 대 상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Oracle-2식), NMS/SMS(Watchall-1식), 스토리지(MSA2040-1식), SAN스위치(MDS-9218S-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5,830,000원, VAT 포함)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5년 10월 21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경산시

제조사·공급사명

(주)에티버스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안)

- 사 업 명 :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북도 경산시(교통행정과)
- 제조사·공급사 : (주)시스원
- 협 약 대 상 : VPN(MF2 50-17식), 연계VPN(MF2 300-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750,000원, VAT 포함)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5년 10월 21 일

발 주 기 관 명

경상북도 경산시

제조사·공급사명

(주)시 스 원

